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 1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 2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 3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 4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5 운용전문인력 운용규모 업데이트
- 6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11.46% , 3등급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기준) 22.48% , 3등급 - 최근현황갱신 (기준일: 직전회계연도)
1.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최근현황갱신(기준일: 직전회계연도)
1.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제3부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3부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3부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최근현황갱신(기준일: 직전회계연도 및 2024년05월31일)
1.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제5부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제5부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제5부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24년05월31일)
2.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전환 기준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전환 기준 <신설>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전환 기준 다. 중도환매 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표 신설>
3.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4.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제2부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2부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4)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C. 연금 인출 방식에 따른 과세: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 외 수령의 경우 과세체계가 다름. 또한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 가능함. 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제2부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4)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C. 연금 인출 방식에 따른 과세: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 외 수령의 경우 과세체계가 다름. 또한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 가능함. 연금소득이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분리과세 선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4.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제2부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2부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 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연금수령분부터 적용)	제2부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분리과세한도: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 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금소득이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분리과세 선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연금수령분부터 적용)
5. 운용전문인력 운용규모 업데이트: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24년05월31일)

6.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u>-최근현황갱신(기준일: 직전회계연도 및 2024년05월31일)</u>
---------------------------------------------	-------------------------------------------------------------	----------------------------------------------------------------------------------------------------------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 1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갱신
- 2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 3 운용전문인력 운용규모 업데이트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갱신: [요약정보] 투자비용,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투자비용,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투자비용,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u>-최근현황갱신(기준일: 직전회계연도 및 2024년05월31일)</u>
2.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간이투자설명서 전반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u>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 않습니다.</u>
3. 운용전문인력 운용규모 업데이트: [요약정보] 운용전문인력	운용전문인력	운용전문인력 <u>-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24년05월31일)</u>